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8년 5월 19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)

□ 제안이유

- 우리시 3개 뉴타운 지역의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및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.(안 제3조)
- 나.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국·도비보조금 및 용자금 등을 수입으로 함.(안 제4조)
- 다. 특별회계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,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

설 및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
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함.(안 제5조)
라.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
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.(안 제6조)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
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
치·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
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정비촉진지구”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
제1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.
2. “재정비촉진사업”이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
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기반시설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
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4. “재건축부담금”이란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3호의 부담금을 말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

고,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국·도비보조금 및 용자금
3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
4. 「지방세법」 제238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퍼센트
5. 차입금
6.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담금
7.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회수금,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8.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
9.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2.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및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
4.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
5.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
6.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

7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·설계비·연구비
8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9. 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

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특별회계설치 운용시 원미, 소사, 오정지구별로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정산을 하는지?	○ 3개 지구를 통합운영 하되 세부적으로 부기명을 달리하여 운영 할 계획임.
○ 3개 지구 주민 부담금중 총 소요비용은 얼마인가?	○ 3개 사업지구에서 소요되는 주민 부담금은 약 1조 4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.
○ 3개 지구 국, 도비 지원 계획은?	○ 주민 부담금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시설 및 도서관, 복지시설 등은 국, 도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.
○ 지역 균형발전 조례를 운용 할 계획은?	○ 현재 조례안에 대해 문구 수정중이고 다음회기에 상정 할 계획임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46호
의결 년월일	2008. 5. 23 (제143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5. 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우리시 3개 뉴타운 지역의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및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.(안 제3조)
- 나.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국·도비보조금 및 용자금 등을 수입으로 함.(안 제4조)
- 다. 특별회계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,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및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함.(안 제5조)
- 라.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.(안 제6조)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정비촉진지구”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.
2. “재정비촉진사업”이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기반시설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4. “재건축부담금”이란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부담금을 말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, 기반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국·도비보조금 및 용자금
3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
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
4. 「지방세법」 제238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
의 30퍼센트
5. 차입금
6.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부담금
7.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회수금,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8.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
9. 총괄사업관리자의 선투자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2.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및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
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
4.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
5.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
6.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
7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
위한 조사비·설계비·연구비
8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9. 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비

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